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가)월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구분	금액(원)		내역		
본인 부담 금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감경)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6%(감경)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미이용(욕조목욕)	60분 이상	47,670
차량 내 목욕	60분 이상	84,670
차량이용 (가정 내 목욕)	60분 이상	76,34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